

OIC 신청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신청서는 지역 CDTFA 사무소 또는 귀하의 계정을 담당하는 부서, CDTFA 웹사이트 및 CDTFA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문의처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OIC 관련 상세 정보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제안이 거절된 경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예. CDTFA는 귀하와 계정에 대해 논의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DTFA에서 귀하가 제안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매월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IRS/FTB/EDD OIC가 승인되었습니다. CDTFA에서 제안을 자동으로 승인합니까?

아닙니다. 귀하의 제안은 이 브로셔에 설명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제안된 금액을 납부해도 괜찮습니까?

예. 제안된 금액 전액은 1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제안된 금액의 일부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CDTFA에서 제안 내용을 평가할 때 사전 납부액을 고려하지 만, 사전 납부액은 제안된 총액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안이 거부된 경우 보증금을 채무액에 충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까 까?

예.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납부한 날짜가 유효한 납부일로 계산됩니다. 단, 타사를 통해 보증금이 결제된 경우, 타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납부한 보증금을 채무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인터넷: www.cdtfa.ca.gov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Offer in Compromise(세액조정 제안) 부서: 1-916-322-7931

판매세 및 사용세 사무소

도시	전화번호	도시	전화번호
Bakersfield	1-661-395-2880	Redding	1-530-224-4729
Cerritos	1-562-356-1102	Riverside	1-951-680-6400
Culver City	1-310-712-1210	Sacramento	1-916-227-6700
El Centro	1-760-352-3431	Salinas	1-831-754-4500
Fairfield	1-707-862-3501	San Diego	1-858-385-4700
Fresno	1-559-440-5330	San Francisco	1-415-356-6600
Glendale	1-818-543-4900	San Jose	1-408-277-1231
Irvine	1-949-440-3473	Santa Clarita	1-661-222-6000
Oakland	1-510-622-4100	Santa Rosa	1-707-890-6267
Rancho Cucamonga	1-909-257-2900	Ventura	1-805-856-3901
Rancho Mirage	1-760-770-4828	West Covina	1-626-671-3702

상기 목록의 사무소 정보는 본 간행물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입니다. 사무소 연락처는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주 계정 1-916-227-66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특별세 및 수수료 1-800-400-7115
Timber Yield Tax(산림 벌채세) 1-916-321-5180

납세자 권리 조언자
수신자 부담 전화: 1-888-324-2798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세액조정 제안

체납 세금 또는 수수료 잔액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개인 및 사업자 대상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의 세액조정 제안(OIC: 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은 세금 또는 수수료 채무를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 납부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액조정 제안은 무엇입니까?

세액조정 제안(OIC)은 CDTFA에 체납된 세금 또는 수수료 전액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는 제안입니다. 귀하가 제안 금액을 제시하고, CDTFA에서 해당 제안을 수락할 경우 귀하의 채무는 더 이상 체납액 전액이 아니며, CDTFA는 제안과 관련된 약관에 따라 관련 세금 유치권을 해제합니다.

세액조정 제안 자격 조건

현재 세액조정 제안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쇄된 계정의 체납 세금 또는 수수료가 있음
- 체납 세액이 발생한 사업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체와 더는 관련이 없음
- 체납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합당한 기간 내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음

200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CDTFA는 현재 영업 중이며 체납된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세에 대한 환급액을 받지 못한 사업체, 전 소유주로부터 인계받은 체납 세액이 있는 사업체 승계자 및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세를 납부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세액조정 제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단, 특정 조건(예: 제안의 승인 전 담보 계약서에 서명 및 이후 5년간 제출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동의할 것 등)이 적용됩니다.

수락 가능한 제안

일반적으로 CDTFA는 귀하가 납부하기로 제안한 금액이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5~7년) 동안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금액인 경우 제안의 수락을 권고합니다. 체납액 전액을 상환할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제안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OIC 사전 자격 판단 도구

온라인에서 [OIC 사전 자격 판단 도구](#)를 참조하여 귀하에게 OIC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OIC 사전 자격 판단 도구는 폐업한 사업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가 있으나 OIC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OIC 부서(1-916-322-7931)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세액조정 제안 신청서(Offer in Compromise Application)를 작성해야 합니다(개인 - CDTFA-490, 기타 모든 신청자 - CDTFA-490-C).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증빙 서류(신청서의 설명에 따름)와 함께 지역 CDTFA 사무소 또는 귀하의 계정을 처리하는 부서(뒷면 참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무소는 귀하의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세액조정 제안 부서로 전달합니다. 제안 시 체납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CDTFA는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고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더 복잡하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분할 납부 계약 또는 소득 원천 징수 명령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 해당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수 활동의 지연이 체납액 징수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제안이 보류 중인 동안에는 새로운 징수 조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안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CDTFA는 체납액 및 귀하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사실과 상황을 기반으로 제안을 평가합니다.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능력
- 자산의 자기자본 금액
- 현재와 미래의 수입 및 지출
-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체납액이 탈세 또는 사기로 인한 채무인지 여부

귀하의 재정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공개 정보 및 비공개 정보의 원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OIC 부서에서 제안의 수락을 권고할 경우 부서 직원이 제안된 금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의 재정 상황을 기반으로 제안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OIC 부서의 재량에 따라 제안 금액의 분할 납부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안 금액의 전액의 일시불 납부 옵션을 선택하면 최종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CDTFA에서 납부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유합니다. OIC 요청이 거부된 경우,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옵션 또는 보증금을 채무액으로 총당하는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 금액의 분할 납부를 선택한 후 예정된 납부액을 송금하지 않으면 CDTFA에서 납부액을 보유하고, 채무액으로 총당합니다.

최종 단계

OIC 부서에서 제안 수락을 권고하고, 위 설명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CDTFA 경영 팀에서 케이스를 판단합니다. OIC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채무액은 최종 결정을 위해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Office)에 제출됩니다. 제안이 승인되면 CDTFA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제안과 관련된 약관에 따라 유치권을 해제합니다.

제안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대안적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안 금액을 일시불로 송금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증금은 무이자로 반환됩니다.